

第10回 臨時會

2004. 9. 1(水)

— 鷄龍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—

檢 討 報 告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申 東 熙

檢 討 報 告

□ 改正背景

-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·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혁신·분권 관련사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2명이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승인됨에 따라
- 동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하려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 중 「혁신·분권」 관련사무 신설
(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 서목)
- 분장사무 : 변화와 혁신, 지방분권,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「혁신·분권」 관련사무를 담당할 인력 2명이 확보됨에 따라, 동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하려는 것으로
- 국가의 주요시책을 신속히 수행하고,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자치단체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 하다고 사료 됨